

사회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3 - 10
안전유형	심의

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도입 추진 계획

2023. 12.



보건복지부

목 차

I . 추진 배경	1
II .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· 보호체계 개선 방향	2
III . 전수 조사 및 단기과제 신속개선 ..	3
IV . 의료기관 출생통보제	4
V .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	6
VI . 도입준비 및 협조 사항	8
VII . 향후 일정	8

I. 추진 배경

- 수원 영아 냉장고 사건('23.6월) 이후, 의료기관에서 '임시신생아번호'(예방접종이력) 부여받았으나, 출생신고 되지 않은 미등록아동 2,267명 전수조사 실시
 - * (1차 6.28~7.7) '15~'22년생 2,123명, (2차 7.28~8.7) '23.1~5월생 144명, 총 2,267명 완료
- 지자체 조사 및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동 시신 발견, 아동 유기 등이 언론에 집중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 제기 및 국민적 관심 증대
- 한편, 익명 아동 유기는 매년 100~200명 규모로 지속 발생, '09년 이후 전체 유기아동 2,974명의 57.9%(1,723명)가 베이비박스*에서 발견
 - * '09. 관악구(주사랑공동체), '14. 군포시(새가나안교회) 설치·운영 중
-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유기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으로 「의료기관 출생통보제」와 「보호출산제」 병행 도입 추진*
 - *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발표('23.4월), 민관 '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' 논의
- (의료기관 출생통보제) 출생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서 아동의 출생정보를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화
 - *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 국회 통과(6.30.) 및 '24.7.19. 시행 예정
- (보호출산제) 출생통보제 도입 시 우려되는 위기임산부의 의료기관 밖 출산과 영아유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 - * 「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 국회 통과(10.6.)

- ◆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시행('24.7.19)을 앞두고 시행착오 없는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한 꼼꼼한 준비 필요
- ◆ 하위법령·업무지침 등 세부 규정 제정, 상담기관 지정·운영 준비, 정보시스템 마련('24년 상반기 내 계약·구축·시범운영 필요) 등 시일이 촉박

Ⅱ. 출생미등록 아동 발굴 · 보호체계 개선 방향

비전

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 지원

추진
전략

- ❖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의 **전수조사 실시**
- ❖ 출생미등록 아동의 상시적 **소재·안전 확인 근거 마련**
- ❖ 출생미등록 아동의 **발생 방지**를 위한 **근본적 제도 개선**

방향

세부내용

①
전수
조사
(‘23.6~)

- ① 임시신생아번호 **아동 전수조사 실시**(적극 행정)
- ‘15~’23.5년생 국내 아동 2,267명, 외국인 아동 5,183명 조사 완료
 - ‘10~’14년생 국내 아동 9,603명 조사 중(10.24~)
 - * 시군구 「출생미등록자 지원 TF」 운영(출생신고 지원, 서비스 연계 등)

②
단기과제
신속개선
(‘23.8)

- ② **출생미등록 아동 소재·안전 조사** 위한 **근거 마련**
- 「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」 개정(8.21) 등
 - ‘e아동행복지원시스템’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강화

③
근본적
제도개선
(‘24.7.시행)

- ③ **의료기관 출생통보제도**
- ⇒ (핵심 과제) 출생통보시스템 구축·운영, 대법원규칙 개정

- ④ **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도**
- ⇒ (핵심 과제) 하위법령 제정, 위기임산부 상담·지원 체계 구축,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
Ⅲ. 전수 조사 및 단기과제 신속개선

□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 조사

- (개요)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,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*로 남아있는 국내·외국인 아동의 소재·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 실시(6.28~)

* 예방접종 기록관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부여하는 7자리 번호(생년월일성별)

- (결과) △(내국인) '15~'23.5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2,267명(복지부),
△(외국인) '15~'22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5,183명(법무부) 전수조사 완료

<국내아동 조사결과>

(단위: 명)

구분	계	소계	지자체 확인완료					소계	수사의뢰 (지자체 → 경찰)		
			생존 확인(884)			사망 확인	의료 기관 오류		경찰 수사(1,119)		
			출생 신고 완료	출생 신고 예정	해외 출생 신고				수사 중	수사 종결	
										생존확인	사망확인
내국인 (1215 가)	2,267	1,148	796	65	23	228	36	1,119	24	1,042	53

* 외국인아동 생존 확인 4,821명, 사망 확인 49명, 수사 중 264명, 기타 49명

※ △'10~'14년생 국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,603명 추가조사 진행중('23.10~12)

□ 위기아동 소재·안전 확인 강화

- 「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법적 근거 마련('23.8.21) 및 조사 실시

- 출생미신고인 경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, 입양여부 등 확인

-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 강화

- 의료기관 미진료, 필수예방접종 미접종 등 44종의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위기아동 발굴 조사('24.1월부터 경막하출혈 등 질환 정보 확대)

<e아동행복지원사업 분기별 시행 내용>

1차(1월)	2차(4월)	3차(7월)	4차(10월)
모형발굴 + 기획발굴 (분기별 3만 명)			만 3세 전수조사*

* 만 36~48개월까지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

IV. 의료기관 출생통보제

- ◆ 신고주의에 기반한 현행 출생신고 제도로는 미신고 시 아동의 공적체계 내 보호 곤란, 모든 아동이 출생 등록되어 공적체계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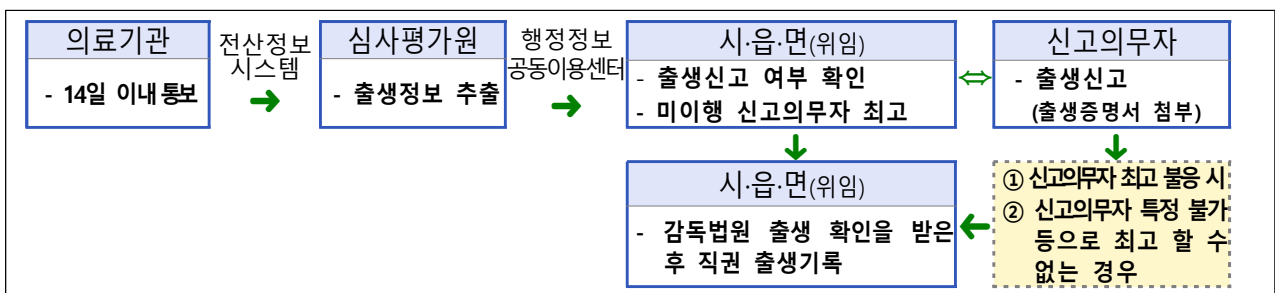
* 주요 선진국(영국, 미국, 독일 등)도 의료기관의 출생 사실 통보 의무 법제화

1 제도 개요

-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❶공공기관에 통보되도록 하여, ❷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아동 발생 방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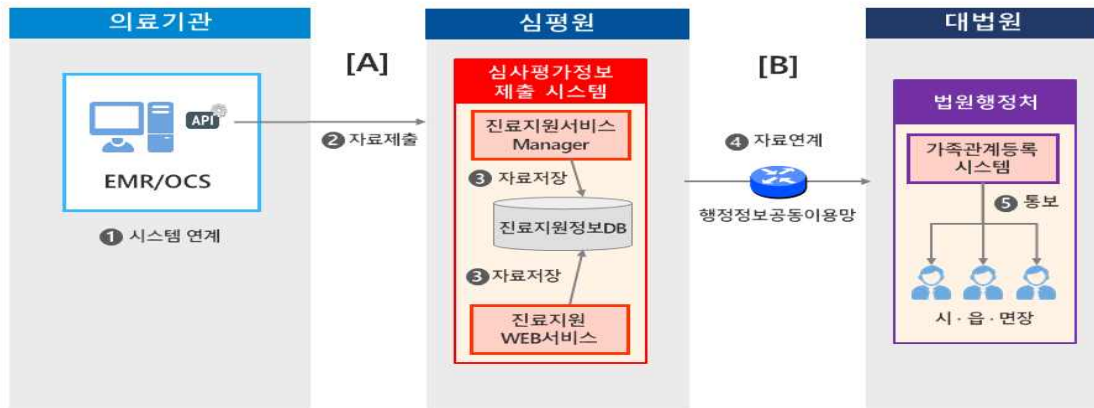
- ❶ 의료기관의 장은 아동이 태어나면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고, 심사평가원은 이를 시·읍·면장에게 통보
- ❷ 시·읍·면장은 출생신고 기간(1개월) 내 미신고 시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
- 최고기간(7일) 내에도 신고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시·읍·면장이 감독법원의 허가 후 직권으로 출생기록

2 주요 핵심 과제



- (❶출생통보시스템 구축) 의료기관이 EMR 시스템에 출생정보 입력하면 '의료기관-심평원' 간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통보
- (❷대법원규칙 개정) 출생사실의 통보, 전산정보시스템 이용방법·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」으로 마련

1 출생통보시스템 구축



- (의료기관 출생정보 수집·전송 시스템) ‘의료기관-심사평가원’ 간 既 구축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의료기관 행정부담 최소화
 - ☞ 출생정보 수집·전송 시스템 개발(12월), 시범 운영(~7월) 및 오픈(7.19)
- (의료기관 EMR 시스템 개선 지원) 각 의료기관 EMR 시스템이 심사평가원 시스템에 출생정보 통보할 수 있도록 개발 업체 지원
- (출생정보 대외연계 시스템) ‘심사평가원-대법원’ 간 출생정보 연계
 - ☞ 프로세스 및 기능 설계(12월), 대외연계시스템 개발 완료(~1월)
- (법원 시스템 개선) 법원에 연계된 출생정보의 내부 통보, 보호자 정보 연계, 최고 기능 등 개발(법원행정처)
 - ☞ 시스템 구축 정보화 용역 계약(~1월), 시스템 구축(~7월) 및 오픈(7.19)

2 대법원규칙 개정 (법원행정처)

- (가족관계등록규칙) 전산정보시스템 이용방법·절차, 출생신고 확인·최고 및 직권 기록 관련 세부 사항 등 규정(법원행정처)
 - ☞ 개정안 초안 확정(~12월), 행정예고(~1월), 대법관 회의 의결 및 공포(2월)
- (가족관계등록예규) 출생통보제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 지침 제정(~4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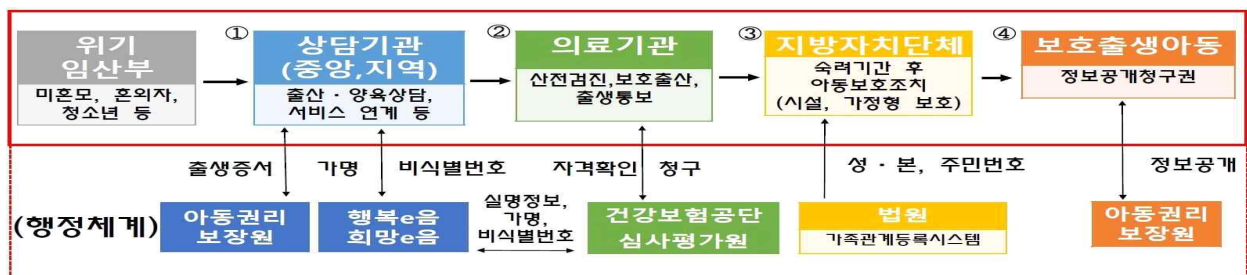
V.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

- ◆ 출생통보제 도입으로 신분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(독일·프랑스 등 유사 제도 운영)

1 제도 개요

- 위기임산부가 ①일정 수준의 상담을 거쳐 ②의료기관에서 가명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, ③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하고 ④기록관리
- 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출산·양육 서비스 연계 등 지원하는 상담체계 구축
- ② 보호출산 신청 산모가 가명으로 검진·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
- ③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 인도되고, 지자체에서 출생 등록 및 보호조치(입양, 시설보호, 가정위탁 등)
- ④母的 신원정보·상담내용을 기록 후 영구 보존하고, 추후 공개하는 절차 마련
-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 추구하고, 보호출산제로 위기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·아동유기 방지하여 아동과 산모의 건강·생명 보호

2 주요 핵심 과제



- (❶하위법령 제정) 상담기관 지정, 보호자 대리 신청, 정보공개 등 규정
- (❷상담체계 구축) 임신부 상담·사례관리 수행, 중앙·지역상담기관 지정·운영
- (❸정보시스템 구축) 상담내용 기록, 비식별정보 생성, 아동 출생통보 등을 위해 희망이음, 행복이음, 심사평가원·건강보험공단 시스템 개편 필요

① 하위법령 제정

- 상담기관 시설 기준·상담 범위, 신청 절차, 보호자 대리 신청 방법, 정보 공개 방법·절차, 아동 보호조치, 신청 철회, 산후 보호출산 등 규정
 - ☞ 하위법령안 부처안 확정(11~12월), 입법예고(~3월),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(~4월) 차관·국무회의 및 공포(5월)

② 위기임산부 지원·상담체계 마련

- (중앙상담지원기관) 상담매뉴얼과 업무지침 마련,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·공무원 교육 등 지역상담기관 지원 업무
 - ☞ 운영 기관 확정(~12월), 채용(~3월), 교육 준비 등 업무 착수(4월~)
- (지역상담기관) 직접 원가정 양육 상담, 보호출산 상담, 신청접수, 아동 출생정보 지자체 통보 등 업무 수행(출생아 수 고려 전국 12개 설치)*
 - * 위기임산부는 '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기 쉬워 초기 상담부터 역량있는 기관 지정 필요
 - ☞ 시·도 설명회(1월), 권역별 상담기관 운영 계획 제출·승인(~2월), 권역별 기관 공모(~3월), 기관 지정·채용(4월), 교육(5월~7월), 운영 착수(7.19)
- (교육·홍보) 지자체 유관 공무원(아동보호·출생등록 등) 및 분만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도 내용 및 업무 절차 등 교육(6~7월)

③ 정보시스템 구축·운영

- (보호출산시스템 구축) 상담 기록 및 관리, 보호출산 신청 접수, 가명정보 생성 및 건강보험공단 시스템으로 전송, 보호출산 아동 출생정보 연계 기능
 - ☞ 정보화 용역 제안요청서 작성 및 관련부서 의견 수렴(~12월)
 - ☞ 업무 사전분석 및 사업 공고(1~2월), 보안성 검토 등 사전협의(~3월), 사업자 계약 및 시스템 개발(~6월), 시스템 오픈(7.19)
- (건보공단·심평원 시스템 개선) 산모 가명정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 가명으로 진료받고 의료비 지급, 보호출산 아동 출생정보 연계(각 기관 ~6월)

Ⅵ. 도입 준비 및 협조 사항

- 주관부처인 복지부 내 추진단과 관련 산하기관 협의체 운영(11월~)
 - (추진단) 복지부 내 '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' (단장 : 복지부 제1차관) 구성·운영
 - (관계기관 협의체) 복지부·건보공단·심평원·사회보장정보원·아동권리 보장원 등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체(단장 : 인구정책실장, 월 1회) 구성
- 법원행정처·여가부·행안부·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의("24.1월~)
 - (여가부)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은 기존 유사한 역할 수행하는 민간기관, 가족센터 등 역량있는 기관 지정 예정, 여가부 원스탑 상담전화 번호 공유하여 적극적 운영
 - (행안부·지자체) 상담기관을 출생아 수에 비례해 운영 예정으로 (약 2만 명 당 1개소, 총 12개 소), 출생아가 많지 않은 경우 복수 시·도가 1개 기관 운영 가능 → 상담기관 운영 시 지자체 간 협조 필요

Ⅶ. 향후 일정

구분	'23.11월	'23.12월	'23.1월	'24.2월	'24.3월	'24.4월	'24.5월	'24.6월	'24.7월
1 하위 법령 제정	초안 마련		부처안 확정	입법예고	입법예고	법제처 심사	하위법령 공포		7.19. 시행
2-1. 제도운영 지침	제도운영 지침 초안 마련			Q&A 마련	제도운영 지침 수정	제도운영 지침 마련			
2-2. 상담 매뉴얼	상담 매뉴얼 개발			상담 매뉴얼 수정·마련	교육 자료 및 매뉴얼 개발	교육 자료 및 매뉴얼 마련	상담요원 교육	상담요원·의료기관·공무원 교육	
2-3. 상담기관 지정		중앙상담 지원기관 결정	지자체 설명회	권역별 지정 계획안 마련	기관 공모	기관 지정, 환경 구축, 인력채용	교육		
3 정보 시스템	업무 프로세스 정의	제안 요청서 도출	사업 공고 및 사업자 계약			기술평가, 협상, 계약, 시스템 개발			